

## 古歡堂 姜瑋의 「擬三政揅弊策」에 나타난 작자의식과 서술적 특징

강 혜 종\*

### 차 례

- |                              |                               |
|------------------------------|-------------------------------|
| 1. 머리말                       | 3. 「의삼정구폐책」의 서술적 특징과<br>의미    |
| 2. 「의삼정구폐책」의 저술 배경과 작<br>자의식 | 1) 구성 및 서술 양상<br>2) 당대 비평과 의미 |
|                              | 4. 맺음말                        |

### 국문초록

본 논문은 1862년 입술민란을 수습하기 위한 구언을 계기로 姜瑋가 지은 「擬三政揅弊策」의 작자의식과 서술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박학한 전고와 치밀한 논지 전개, 유려한 문체, 제출되지 않은 擬作으로서의 특수성은 조선시대 시무책의 문학사적 고찰을 위한 유의미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강위는 입술년의 구언을 매우 긍정적으로 여겼으며, 「의책」은 자신의 경험과 경세론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작품이었다. 「의책」의 저술은 친우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정건조의 강권이라는 외부적 동기뿐만 아니라, 모순된 사회 현실에 대한 ‘發憤’이라는 강한 심정적 동기에 기인한 것이었다.

『의책』은 군정을 중심으로 제도 개혁적 구폐책을 제시하는 실용적인 시무책이라고 할 수 있다. 책문에 종종 보이는 과도한 칭양의 투식어구와 당위론적 서술을 지양하고, 민란의 현장을 상세히 묘사하며, 역설과 전도의 수사법으로 개혁의 당위성을 촉구하는 서술적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삼정 운영론에 방점을 두도록 유도한 策題의 방향성에 구애받지 않고, 제도 개혁의 논리를 전개하기 위하여 고제의 연혁과 득실, 역대 제도의 변천 과정을 자세히 검토한다.

글의 후반부인 주의와 편종 단락은 전 분량이 군정 개혁과 병권 강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대책의 편종이 군주성학론이나 용인론 등 도학적 경세론에 치우친 서술 경향성을 보이는 것과 달리, 『의책』의 편종은 주의 단락에서 전개된 금포지란의 심화된 논의에 더하여 군주의 병권 강화를 서술한다는 점에서 편종의 정형성을 벗어나고, 글의 전반을 일관된 주제로 전개하는 정합성을 보여준다.

주제어 : 고환당 강위, 擬三政掇弊策, 삼정책, 임술민란, 시무책

## 1. 머리말

古歡堂 姜瑋(1820-1884)의 『擬三政掇弊策』<sup>1)</sup>은 1862년 壬戌民亂<sup>2)</sup>을

1) 이하 본문의 논의에서 작품명은 『의책』으로, 통칭적 표현으로는 삼정책으로 언급한다. 또한 策文은 策問과 對策을 함께 지칭하고, ‘대책문’은 대책으로 지어진 글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2) 1862년 2월 丹城에서 시작되어 전국 70여개 군현에서 발생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는 ‘임술민란’, ‘임술농민항쟁’, ‘임술민중항쟁’ 등으로 지칭된다. ‘민란’이라는 용어는 지배층의 시각이 반영된 표현으로, 당대의 사회구조적 모순에 대응한 피지

계기로 작성된 對策으로, 박학한 전고와 치밀한 논지 전개, 격절한 어조와 유려한 문체, 제출되지 않은 擬作으로서의 특수성을 지닌 작품으로 조선시대 시무책의 문학사적 고찰에 유의미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1862년 丹城에서 시작되어, 삼남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대된 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조정은 三政釐正廳을 설치하고 구폐책을 수렴하는 구언을 내렸다. 강위는 친우 鄭健朝의 권유로 약 삼만 여자에 달하는 장편의 삼정책을 작성하고도 제출하지 않고 불태웠으나, 정건조가 글을 수습하여 현전하게 된 것으로 알려진다.

강위는 무반 가문의 출신으로, 문신이 되기 위하여 공령문에 힘쓰기도 하였으나, 과거를 포기하고 閔魯行과 金正喜의 문하에서 고증학을 수학하였다. 당대에 손꼽히는 시인으로 평가되었을뿐만 아니라 높은 경제력 안목을 지닌 인물로도 인정받았다. 「의책」에 붙인 「자서」를 보면, 당시 南秉哲과 趙斗淳 등 고관들이 그의 견해를 듣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조두순은 鄭元容과 함께 이정청 總裁官을 맡아, 철종의 策題<sup>3)</sup>를 代製하고 제출된 대책의 考試를 주도하였으며, 남병철 역시 이정청 당상관을 맡았던 인물이었다.

그 동안 강위의 삼정책은 주로 경제론과 부세체제를 분석하기 위한 사료적 텍스트로 다루어졌다. 초기의 대표적인 연구로 이광린은 학계에 소개된 강위에 대한 본격적인 인물론 고찰을 통해 근대사적 위상을 밝

배층의 항쟁적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본고에서는 용어가 지닌 함의를 염두에 두면서, 원문에 근거하여 ‘민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임술민란기에 대해서는, 망원한국사연구실, 『1862년 농민항쟁』, 서울: 동녘, 1988; 김용섭, 『韓國近代農業史研究 3: 轉換期の 農民運動(II)』, 서울: 지식산업사, 2001; 김용섭, 『韓國近代農業史研究 1: 農業改革論 農業政策(I)』, 지식산업사, 2004(新訂 增補版); 송양섭, 「임술민란기 부세문제 인식과 三政改革의 방향」, 『한국사학보』 49, 고려사학회, 2012; 배향섭·손병규, 『임술민란과 19세기 동아시아 민중운동』,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3; 송찬섭, 「1862년 농민항쟁과 소통의 정책」, 『한국사연구』 161, 한국사연구회, 2013 등 참조.

3) 『列聖御製』(국립중앙도서관본)에는 ‘三政球弊策題’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데, 본문에서는 편의상 策題라고 부르기로 한다.

했으며<sup>4)</sup>, 김용섭은 임술년 삼정책의 전체적인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試策의 배경과 의미를 밝히고, 삼정책에 나타난 개혁론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의책」의 내용을 검토하였다.<sup>5)</sup> 이후 강위에 대한 심층적인 인물론과 「의책」에 집중한 분석이 진행되어왔다. 본고의 논의와 관련하여, 이현주는 개항 직전 강위의 현실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자료로 「의책」을 주목하고, 저술 경위를 상세히 고찰하였으며, 농업경영의 변동과 농민층의 분화 등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제도개혁적 논의라는 점을 밝혔다.<sup>6)</sup> 임성수는 본격적으로 「의책」의 전체적인 내용 분석에 집중하면서, 강위의 임술민란에 대한 인식과 軍政 중심의 제도개혁적 논의를 면밀히 분석하였으며, 군주에게 부여된 禁暴止亂의 역할을 강조한 점이 일반적인 유자들의 견해와 변별된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sup>7)</sup>

문학연구에서도 「의책」이 검토되었다. 대표적으로 주승택은 강위의 시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문학세계를 고찰하는 가운데, 강위의 현실인식을 살피기 위한 작품으로 「의책」에 주목하고, 저술 경위와 주위의 평가 등을 아울러 검토하면서, 학문적 온축이 담긴 현실개혁 방안이라고 평가하였다.<sup>8)</sup> 박재경은 조선시대 대책을 개관한 연구에서, 문집총간에서 확인되는 총 800여 편의 대책 중 『策文準的』에 언급된 책규를 문집에 직접 표기한 글로는 강위의 작품이 유일하다고 지적하며, ‘聖策’이나 ‘伏讀’이라는 대책의 상투어구를 발견할 수 없는 점을 특징으로 거론하였다.<sup>9)</sup>

4) 이광린, 「姜瑋의 인물과 사상- 實學에서 開化思想으로의 轉換의 一斷面-」, 『동방학지』 1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76.

5) 김용섭, 「哲宗朝의 應旨三政疏와 三政釐整策」, 『한국사연구』 10, 1974; 「哲宗朝의 應旨三政疏와 三政釐整策」, 앞의 책, 2004.

6) 이현주, 「개항 직전 姜瑋의 현실 인식」, 『한국사상사학』 35, 한국사상사학회, 2010.

7) 임성수, 「임술민란기 秋琴 姜瑋의 현실인식과 三政改革論」, 『조선시대사학보』 79, 조선시대사학회, 2016.

8) 주승택, 「姜瑋의 思想과 文學觀에 對한 考察」,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이후 강혜중은 현전하는 100여 편의 임술년 삼정구폐안 중 『의책』의 글쓰기적 특징을 검토하여, 균정을 중심으로 서술된 강위의 글이, 다른 삼정책에 비하여 책체에 구애받지 않고 거침없이 文才를 드러내는 擬策의 특징을 드러내는데, 상고주의적 서술의 전개 방식, 논지에 대한 근거 자료의 인용, 설폐의 범주와 표현 등에서 대책의 전형성을 벗어난 면모를 보인다는 점을 밝혔다.<sup>10)</sup>

이처럼 축적된 선행연구를 통해서 강위의 생애와 현실인식, 『의책』의 저술 경위, 경세론과 서술적 특징이 밝혀져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의책』의 작자로서의 강위의 면모와 전체적인 텍스트의 글쓰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비평을 통한 문학적 고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임술년 삼정책은 조선 문인의 策文에 대한 인식, 문체적 특징, 실천성 등을 제고할만한 요건을 갖춘 자료라고 할 수 있다. 科文으로 작성된 다수의 대책과 달리 당면한 현안 해결을 위한 시무책으로의 특수성을 지녔으며, 이는 작자 간에 변별되는 서술적 특징으로도 드러난다. 특히 강위는 글을 작성할 당시의 상황과 심경을 자세히 적은 서문을 남겼고, 발문에는 글에 대한 비평이 남아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의책』과 서발문, 당대인들의 비평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의책』에 나타난 작자인식과 서술적 특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강위의 시무책을 문학적인 관점에서 본격적으로 고찰하는 작업으로, 당대에 손꼽히던 시인 강위의 면모뿐만 아니라 문장가였던 강위의 한문산문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19세기 시무책의 지형을 더욱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9) 박재경, 『조선시대 책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4.

10) 강혜중, 『壬戌(1862)년 三政救弊論의 형성 양상과 성격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 2. 「의삼정구폐책」의 저술 배경과 작자의식

1862년 2월 단성에서 촉발된 입술민란이 삼남 일대로 더욱 확대되자, 조정에서는 안핵사 박규수의 건의로<sup>11)</sup> 5월에 삼정이정청을 설치하고<sup>12)</sup>, 6월에 조야의 관료와 유생에게 구폐책을 묻는 구언을 내린다. 2품 이상의 관료는 獻議하고 3품 이하의 관료 및 재야 유생들은 親策<sup>13)</sup>하기로 정하였으며, 책제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 열흘 간 작성할 시간을 주었다.<sup>14)</sup> 또한 책문을 등서하여 팔도의 지방에도 내려 보내 의견을 상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15)</sup> 이러한 철종의 구언은 많은 호응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sup>16)</sup> 하지만 강위는 시책에 응하지 않은 채 정건조의 적극적인 권유로 한 달여간의 시간동안 그의 집에 머물며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강위의 「의책」은 현전하는 삼정책 중, 상세한 저술 경위와 글에 대한 비평이 담긴 서발문이 모두 확인되는 유일한 작품으로, 강위가 지은 두 본의 「의책」 자서가 전한다. 『古歡堂收艸文稿』<sup>17)</sup> 권1에 수록된 「擬三政揀弊策序」<sup>18)</sup>는, 권4에 수록된 「의책」, 「自序」<sup>19)</sup>의 서두와 말미 부분만이

11) 朴珪壽, 『獻齋集』 卷6, 「請設局釐整還餉疏」, 한국문집총간 312, 405a쪽.

12) 『철종실록』 철종 13년, 5월 26일.

13) 서사증의 『文體明辯』에는 황제가 시험하는 ‘制策’과 구분하여 有司가 시험하는 ‘試策’을 구분한 바 있는데, 『철종실록』의 원문에는 親策으로, 임술년 6월 10일의 전교에는 試策으로 표현하였으므로, 본고에서는 실록의 원문에 따른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14) 『철종실록』 철종 13년, 6월 10일.

15) 『철종실록』 철종 13년, 6월 12일.

16) 정원용은 『經山日錄』에 전국적으로 만 여장의 시권이 건했다고 하였으며, 『袖香編』에서는 인정전의 친책 이후 900여장을 考試한 다음 백여장을 추가로 진행하였다고 하였다. 許傳의 문도인 曹垣淳의 『復菴集』의 기록에는 수백 명이 참여하였다고 전한다.

17) 본고는 서울대 중앙도서관본 『古歡堂收草』를 저본으로 영인한 한국문집총간 318집의 쪽수를 따른다. 이하 강위 작품의 원문 인용에, 문집명은 『詩稿』와 『文稿』로 구분하고, 작품명과 쪽수만을 기재하기로 한다. 문집명에 ‘收草’와 ‘收艸’의 표기법은 소장처 및 발행처를 따르기로 한다.

실린 편집본으로, 저술 경위와 동기가 주요 내용이다. 『의삼정구폐책서』에서 빠진 『자서』의 내용은, 철종의 구언에 대한 인식, 삼정에 관한 정책적 의견과 당대의 여론, 조정의 조치와 사후의 상황까지를 포함한 내용 등으로, 『자서』는 『의책』 작성 전후의 전말과 강위의 생각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 강위의 문집을 校讐한 李建昌은 『시고』에 붙인 서문에서, 강위의 뜻을 잘 알 수 있는 글로 『擬策自序』를 꼽았는데, 이는 이견창이 필요에 따라 축약한 본<sup>20)</sup>이 아닌 『자서』인 것으로 보인다.

『자서』에 따르면, 강위는 민란의 화를 피해 상경하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전 정건조를 방문하였는데, 정건조는 강위를 생각한지 오래였다고 환영하며 자신이 작성해 놓은 戶賦에 대한 설을 보여주면서 강위의 의견을 구하였고, 강위는 좋다고 답하며 이것이 정건조 집안의 논의임을 알아보았다. 정건조가 보인 호부의 설은 그가 지은 『三政厘正議』<sup>21)</sup>의 말미에 서술된 戶錢論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귀천에 관계없이 역을 담당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강위의 시각과 일면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정건조는 현종 때 대사헌을 지낸 정기일의 장남이자 정원용의 손자로, 어린 시절부터 20여 년간 함께 수학하며 강위의 평생의 지우가 되었다. 강위는 과거에 대한 뜻을 접고 1843년경 민노행의 문하에 들었다가, 1846년부터 김정희의 문하에서 수학한 후, 스승의 허락을 받고나서 1852년경부터 약 3년간 전국을 유람하였다. 이후 申櫛에게 의탁하며 수년 간 무주에서 지냈고, 임술년에도 가족과 함께 무주에 머물렀는데, 이 때 亂民들이 강위에게 檄文을 지어달라고 한 청을 거절하자 집을 불태워 피신하여 상경한 것이다.<sup>22)</sup>

18) 『文稿』 卷1, 『擬三政揅弊策序』, 485b-486c쪽.

19) 『文稿』 卷4, 『擬三政揅弊策』, 『自序』, 519a-523c쪽.

20) 주승택은 축약본 서문이 이견창이 문집을 교수할 때, 글의 문학적 특징을 잘 드러내도록 편집한 것이라고 보았다. 주승택, 앞의 논문, 120-121쪽.

21) 鄭健朝, 『蓉山私藁』 坤冊, 『三政厘正議』, 서울대 규장각본, 3a-5a쪽.

강위를 만난 정건조는 남병철과 당시 경장의 논의를 주관했던 조두순이 강위의 글을 구한다는 청을 전하였지만, 이를 모두 거절하는 강위를 안타까워하며 글을 짓도록 강권한다. 이에 강위는 당시 부득이하게 붙들려 방에 갇혔으나 며칠 밤을 고민해도 작성할 수 없어, 과문한 지식으로 불가하다고 읊소하며 집으로 돌아가기를 청하였지만 정건조가 허락하지 않았다. 정건조는 글의 매 단락이 완성되면 읽고 기뻐하며 격려하였는데, 완성된 글에 鱗甲이 너무 많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없으니 삭운을 하라고 조언하였다. 강위는 이를 따르겠다고 답하였으나, 정신이 다하고 생각이 고갈되어 수일이 지나도 고칠 수 없었으며, 집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이 컸기에 술을 들이키고는 구석진 곳에서 태워버린 후 알리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회고하였다. 강위는 글을 고칠 여력이 없었음을 피력한 것이지만, 이는 글을 수정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상세한 저술 경위가 기록된 서문은 강위가 자신이 태워버린 글을 4년 후에 받아보고 짓게 된 것이다. 현전하는 「의책」은 여항인 鄭昌이 강위가 글을 작성하며 남겼던 원고를 수습하여 정건조에게 보이자, 정건조가 이를 한 편의 글로 정리하도록 해 놓은 것이다. 정건조는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남겨놓았다.

(상략)

술에 취해 떠돌면서 군담을 즐기니	酒酣歷落喜談兵
일곱 글자는 때마침 출세의 곡조를 이루네	七字時爲出塞聲
「의책」을 짓고는 찢어버렸지만	擬策成來還扯去
화완포 오히려 새롭고 맑아짐을 어찌 알았겠나	那知火浣轉新清

임술년의 대책의 구할 때에, 군이 園館에 이르러 나와 노닐다가 다그치니 글을 지었는데, 홀연히 술을 따라놓고 낭송하고는 불태워버렸다. 그 광기가 이와 같았는데, 종이쪽에 적은 초고를 수습한 것이 있어 나에

22) 강위의 생애에 대해서는 주승택 앞의 논문과 이현주, 『姜瑋의 개화사상 연구』,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8, 35-98쪽 참조.



게 보인 것을, 내가 한 본을 만들도록 한 것이 또한 읽을 만하여 4년 후에 군에게 보였다. 군은 포복절도하며, 미치광이 장옥처럼 술에 흠뻑 취하여 쓴 것 같다고 하고는, 마침내 기꺼이 나를 위하여 서문을 지었다.<sup>23)</sup>

(하략)

정건조는 평소 술을 마시고 군담을 즐겼던 호방한 강위의 모습과 아울러, 『의책』을 불 속에서 더욱 빛나고 깨끗해지는 화완포<sup>24)</sup>에 비유하였다. 시 옆에 남긴 협주로 저술 경위를 설명하면서, 강위가 4년 후 수습된 자신의 글을 보고, 스스로를 장옥에 빗대었다는 사실을 기록해놓았는데, 장옥은 초서에 능한 인물로 술에 취해 글씨를 쓰고 술이 깬 후에 자신의 글을 따라하지 못했다는 기인이다.

강위는 불태워버린 글이 수습된 경위에 대하여, 정창이 매년 글을繕寫할 때마다 버린 원고를 가져가 정리해 놓았다가 사사로이 거둔 것이 라고 밝히면서, 이 글이 정본과 다르기 때문에 전해지기에는 부족하지만, 정창의 노력은 남기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였다. 당시 글을 남기기를 주저하는 자신에게 정창이 글의 취지만이 어떠한지를 묻고, 곁에 있던 정건조도 자신을 위하여 매우 한탄하자, 글 한편을 정서하여 남기게 되었다면서, 생각을 정밀히 엮어 정본을 취해보고자 하였지만, 우환이 있고 쇠미해진 가운데 겨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흥이 없었기에 그냥 두고 다시 짓지 않았다고 하였다. 『의책』이 정본이 아닌 저간의 사정을 매우 상세히 기록한 셈인데, 이는 글에 더욱 완성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변

23) 壬戌詢策時，余遊君至園館，迫而成之，忽酌酒朗誦而燒之。其狂如此，有拾片紙初藁，示余者，余使綴成一本，亦自可讀。後四年示君。君爲之絕倒，謂如張顛濡首之筆，遂肯爲余序之。『詩稿』，鄭健朝，『序』，373c쪽.

24) 『列子』，『湯問』에 “화완포의 때를 씻으려면 반드시 불 속에 던져 놓아야 한다. 베는 불빛이 되고 때는 잿빛이 되는데, 불 속에서 베를 꺼내 털면 희고 깨끗하기가 마치 눈빛 같다.[火流之布，浼之必投於火。布則火色 垢則灰色，出火而振之，皓然疑乎雪.]”고 하였다.

명이자, 「의책」을 매우 중요한 글쓰기로 여겼다는 방증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金澤榮도 강위가 「의책」을 지었던 당시의 기록을 남겼는데, 강위가 군제를 바꾸고 호부를 균등하게 해야 한다는 수 만자를 極論한 이후, 무익한 자신의 글이 그저 사람들을 현혹시킨다고 웃으며 말하고는 글에 술을 붓고 제사를 지낸 다음 불태워버리고 도망갔다고 하였다.<sup>25)</sup>

강위의 생각은 당시의 심경을 남긴 다음의 시를 통해 짐작해 볼 수 있다.

「의책을 짓고 나서 술을 붓고 태워버리다[擬策成酌酒而燒之]」

종횡으로 병향을 삼천 자 논하니	縱橫兵餉三千字
묵은 춤추고 붓이 노래한지 한 달여가 되었네	墨舞毫歌一月餘
단지 성문에서 나무 옮기기 어려운 것이니	只是都門難徙木
누가 대국을 작은 생선 삶는 것에 견주었나	誰將大國比烹魚
밝은 시절엔 유분책에 의지하지 않고	明時無藉劉蕡策
내세에나 차라리 가의서를 행하리	來世寧行賈誼書
푸른 하늘 우러르고 난잡한 것을 불태워	仰視青天燒拉雜
기꺼이 원본을 허공으로 돌려보냈다네	好將原本返空虛

이 시는 강위가 兵餉에 중점을 두어 「의책」을 지었으며,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삶듯 해야 한다는 위정의 방법론보다는 백성이 위정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드러낸다. 또한 환관의 전횡을 직언한 유분의 대책과, 가의의 상서와 같은 구폐책이 행해지기 어려운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25) 哲宗末, 三南亂民起時, 秋琴子流寓茂朱山中, 民刦爲檄文, 秋琴子拒之, 民怒燹其廬. 秋琴子脫身歸京師, 既而朝廷發策問求能救糴兵賦三政弊者, 所善鄭判書健朝招至其家, 勸對策甚勤, 秋琴子乃極論變軍制均戶賦爲數萬言. 既成, 笑曰: “無益, 徒眩人爲.” 酌酒向文酌之, 焚之而逃. 金澤榮, 『韶濩堂集』 卷9, 「秋琴子傳」, 한국문집총간 347, 337a-b쪽.

강위는 상경하고 보니 논설이 다단하였는데, 대개 罷還과 戶賦를 상행하는 논의가 당시의 중지였다고 하였다. 영의정이었던 정원용의 근처에 머무르며 논의를 자못 들었고, 크게 불가하다고 여겼다고 하였는데, 『의책』에도 당시의 仍舊論과 釐革論의 해묵은 논의를 비판하는 내용을 서술하였다. 이와 같은 분위기에서 강위는 백성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없는 현실의 한계를 인지하고, 자신의 친우까지 『의책』을 산삭하도록 권하니 글이 현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력을 다하여 삼만 여자에 달하는 글을 지었던 이유는 당시 구언에 대한 강위의 생각에서 일부 찾을 수 있을 것이다.<sup>26)</sup> 강위는 당시 묘당으로부터 여항의 유식한 선비들까지 모두 생각을 다하여 변고를 막을 대책을 궁구하도록 하였고, 또한 문사에 얽매이지 않고 소견을 진술하게 하였다면서, 널리 의견을 구하는 지극한 뜻이 있었기에 여러 구폐논의가 이어져 나라의 병폐를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 糶漕를 밝히고 糶規를 혁신하고, 漏丁을 두루 조사하고, 量田을 행하고, 군대를 혁신하고, 宮額과 員役을 줄이고, 군제를 바꾸어 호역을 고르게 하자는 논의 등이 모두 떨리는 고제를 융성시켜 일으키는 데에 부합하고, 시폐의 요체에도 절실히 들어맞았다면서, 이는 현명한 군주와 어진 신하가 만나는 때이고, 폐단의 근원을 막힘없이 궁구하여 만세의 태평한 사업을 창업할 때였다고 평하였다. 후술하겠지만, 강위는 경용의 급대 방안 마련을 중심으로 삼정 운영상의 구폐책에 치우친 논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나, 임술년의 구언이 여러 논의들이 수렴되어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서문을 쓰는 시점에서 당시를 돌아보고는 기대와 같은 변화를 이룰 수 없게 된 형국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했다.

강위는 조정이 貴賤과 賢愚를 따지지 않고 대책을 구하였지만 끝내

26) 이하의 내용은 『문고』 권4에 수록된 『의책』, 『자서』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쓸 만한 대책이 없었는데, 이는 나라를 위한 인재가 없었던 것이고, 설령 있더라도 쓰일 수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기대할 바가 없었다면서, 자신이 당초 쓰이지 않을 대책의 해악을 근심하였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民擾가 발생하여 원망이 조정에 이르렀고, 호문거족이 먼저 그 액을 만나 면하는 자가 없었으며, 노기가 사대부에 있었는데, 국가가 별렬로써 인재를 등용하고, 문사로 선비를 뽑았기 때문에 쓸만한 대책이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민란이 그친 이후에 윗사람들은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백성을 희롱하고, 아랫사람들은 더욱 게을러졌으며, 벼슬아치들이 멋대로 성을 내고, 백성은 완악해져, 서로 원수 같이 사이가 악화된 것이 예전보다 심해졌고, 법기에 위엄이 없었다고 하였다. 또한 온 백성이 涸轍에 처한 것과 같고, 고장을 편안히 여기는 즐거움이 없는데도, 人主에게 도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백성들이 원망하며 나라에 기대할 바가 없었다면서, 민란이 곧 수습되었지만, 대사공, 대규제, 대방략, 대의론을 조석으로 강구하여 성상의 마음을 계발시켰는지 알 수 없으며, 근정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파다하게 들려왔으나, 교왕과직한 것이 없지 않았고, 세세하게 토론하고 깊이 논의하지 않고 급히 시행하여서 신뢰가 없이 망령될 뿐이었다고 비판하였다.

이처럼 강위는 임술년의 구언의 취지에 동감하고 여러 구폐 방안이 논의되었다는 것에는 의미를 부여했지만, 폐단을 혁파하는 실질적인 정책 실현에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이는 用人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강위가 「의책」의 자서를 쓰는 시점에서 회고하는 당시의 저술 동기는, 시절을 근심하여 대책을 작성하였던 절실한 마음이었다.

일찍이 의책을 한번 지었는데, 이는 산야의 공공연한 발분이 지은 것이다. 어찌하여 발분하였는가. 당시 선조가 남쪽의 민란에 식음을 전폐하고 애끓는 심정을 지니고, 조정의 큰 논의가 있어 크게 행해졌질 수

있었지만, 때에 얽매어 누차 기회를 놓쳤다. 어찌하여 공공연히 발분하였는가. 어리석고 천한 자가 당연히 발분한 것이 아니고, 이미 스스로 그것이 공공연한 발분임을 알고 발분하였다. 또한 의책을 짓게 된 것은 어째서인가? 스스로 성스럽고 밝은 세상이라고 헤아리지 못하였기에 이 의론이 없을 수 없었다. 어찌 의책이라 일렀는가? 비록 일찍이 뜻을 가지고 이와 같이 지어보고자 하였으나, 또한 스스로 그 문장이 이순하지 못하고 언사에 궤격함이 많은 것을 혐의하여, 겨우 스스로 분을 풀어놓았을 따름이며, 실제로 감히 바쳐 관철하지 못하였다. 비록 그렇지만 어찌 사정에 그칠 수 있겠는가? 귀갑과 보옥이 함 속에서 훼손되니 애석한 마음이 있었고, 범과 들소가 우리에서 탈출하니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 이 의책을 짓는 것에 애석하고 두려워할 만함이 있었으니, 아아, 누가 나로 하여금 발분하여 의책을 짓도록 만들었는가? 『논어』에 “분발하지 않으면 깨우쳐 주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장차 나를 깨닫게 하실 것이었다. 그러나 마음을 평온히 하고 기분을 순화롭게 하여, 기량을 다하여 지어 한마디를 얻은 것이 이치에 맞음도 감히 바랄 수 없는데, 하물며 분격된 마음을 풀어놓고, 괴벽하고 우월한 말을 내키는 대로 떠들썩하게 내놓고자 한다면, 어찌 도리에 맞겠는가? 하물며 억지로 급히 취하여 이를 짓고자 한 것이겠는가? (중략)

심히 다시 정밀한 생각을 엮어 정분을 얻고자 하였으나, 우환이 있고 쇠미해진 가운데 겨를이 없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또한 흥이 없었기에 그냥 두고 다시 짓지 않았다. 나는 이미 게으름을 탐하여 문사에 뜻이 없음이 이와 같았다. 또한 예전에 정분을 지은 것도 오히려 남들에게 보일 수 없었거늘 하물며 이 버리는 원고에라? 비록 그렇지만 일찍이 산이 비어 밤이 고요하여 두견새 울음 막 그치고, 등불 쇠잔하고 향불 타오를 때, 좋은 친구가 홀연히 찾아와 한 두 대책을 시험 삼아 취하여 한번 읊고 한 번 듣고서는, 매우 좋은 기회를 누차 잃고 빈말을 보태지 않음을 한탄하니, 가버린 듯하다가 이미 돌아와, 마침내 고심하고 번뇌하게 되었다. 또한 그 얽힌 애통한 생각, 근심하고 감개하며, 원망하고 탄식하는 소리에, 마름 끝 바람이 일어나고, 얼음 산골짜기의 샘이 울며, 왕왕 말이 뼈를 질러 사람으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게 만들고자 하였다. 타고난 자품이 각박한 자의 말과 크게 비슷하니, 내가 지은 것 같지 않다. 아, 내 가슴에 쌓여, 내 말로 토해져 나오고, 내 손에서 탈고되어, 나로 하여금 읽게 하였는데, 내가 지은 것 같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지금과 옛날의 사정이 다르다. 아, 지금 나는 고단하고, 해가 가면서 뜻이 쇠해졌으며, 때가 옮겨감에 일이 변하였기에 옛날의 용기를 복돋는 기상이 다시 생기지 않지만, 오히려 그 때를 열람하는 느낌이 있었기에, 이 글을 얻고도 차마 버리지 못하고, 그 자초지종을 적어 헤진 상자에 담아두었다. 아, 치란에는 운수가 있고 비태는 서로 찾으니, 大化에 노닐면서 大命에 편안하여, 그 때의 공공연한 분노는 다시 남아있지 않다.<sup>27)</sup>

위의 인용문은 『자서』의 서두와 마지막 부분으로, 『의책』을 짓게 되었던 당시의 분위기와 자신의 심정적 동기를 극진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강위가 『의책』을 지을 때 온 힘을 기울여 몰두했던 중요한 원인은 첫 문장에서 언급한 ‘發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개인적인 발분에 그친 것이 아닌 당시의 ‘공공연한 발분[公然發憤]’이었다.

강위는 자신의 글이 비록 문사가 거칠고 그저 분을 풀어놓아 왕에게 바칠 수는 없는 擬策이지만, “귀갑과 보옥이 함 속에서 훼손되니 애석한 마음이 있었고, 범과 들소가 우리에서 탈출하니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

27) 嘗著擬策一道, 是山野公然發憤之所作也. 曷爲發憤? 伏遇先朝因南擾吁食之日, 主有切心, 廷有偉論, 可大有爲而囿於時, 屢失機也. 曷爲公然發憤? 非愚賤之所宜憤也, 既自知其公然發憤而憤. 且至於有作, 何也? 竊不自揆以爲聖明之世, 不可無此議論也. 曷云擬策? 雖嘗以意擬之如此, 然又自嫌其文不雅馴, 辭多詭激, 聊自抒憤而已, 實未敢以進徹也. 雖然, 豈能已於情哉? 龜玉毀于楨, 則有惜心焉. 兕虎出于柙, 則有懼心焉. 此策之作, 以有可惜而可懼也, 嗟呼嗟呼, 孰使余發憤而有作? 論語曰: “不憤則不啓”, 殆將有啓余者乎. 然使余平心舒氣, 盡伎倆而爲之, 以求一言之有中, 不敢望也, 而況欲以據憤激之衷, 騁乖迂之辭, 叫呶噴薄而出之, 安能有中? 況欲強副急就而爲此者乎? (중략) 甚欲更構精思, 以就正本, 而憂患之餘, 瑣尾之中, 非但無暇而亦無興, 置不復作. 余既耽懶, 無意於文辭如此. 且昔所爲正本者, 尚不可以示人, 而況茲棄稿乎? 雖然, 嘗值山空夜靜, 冤禽纔歇, 燈殘香地, 良友忽至, 試取一二策, 一諷而一聽之, 痛好機之屢失, 唉空言之無補, 似往已廻, 境苦心煩. 且其纏綿悱惻之思, 憂愁慷慨怨歎之音, 蘋末風起, 冰壑泉咽, 往往言之刺骨, 欲令人不能堪. 大類天姿刻薄者之辭, 若非余之所爲者也, 嗟呼, 畜於余胸, 吐於余口, 脫於余手, 使余讀之, 而若非余之所爲者, 何也? 今昔之異情也. 嗟呼, 今余憊矣, 年邁志衰, 時移事變, 無復昔日賈勇之氣, 而尚有閱時之感. 故得此卷而不忍棄也, 叙其始末而投之敝笥. 嗟呼, 治亂有數, 否泰相尋, 遊於大化, 安於大命, 曩時公然之憤, 無復存者矣. 『文稿』卷1, 『擬三政揅弊策序』, 485c-486c쪽.

고 하여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을 견딜 수 없었음을 밝히고 있다.

강위가 인용한 구절은 노나라의 대부 계강자가 속국의 顛隄를 정벌하려 할 때 계강자의 가신인 冉有와 子路가 이를 저지하지 못한 것을 두고 공자가 “범과 들소가 우리에서 뛰쳐나오고, 거북 등껍질과 옥이 상자 속에서 훼손되었다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겠는가? [虎兕出於柙, 龜玉毀於櫝中, 是誰之過與]”라고 하며 책임을 물었던 말에서 취한 것이다. 이는 군주가 올바른 정사를 펼칠 수 있도록 보필하지 못한 신하의 잘못을 비판한 것으로, 임술년 당시의 정치적 현실을 바라보는 강위의 시각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인용한 부분에 이어지는 내용은, 계강자가 정벌에 나선 이유가 나라의 재정을 근심하였기 때문이라고 본 공자가 “가난을 걱정하지 않고, 고르지 못함을 근심한다[不患貧而患不均]”라고 말하며 국정 운영의 방점이 ‘均’에 달려 있다고 한 것이다. 이 구절은 『의책』의 軍政 단락을 마무리 하면서도 언급되었는데, 均民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아닌 經用的 給代 방안에 고심하였던 당시 조정의 입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아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표면적인 『의책』 저술 동기는 정건조의 강권에 의한 것이지만, 장편의 삼정책을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것은, 강위가 시삼백을 지은 동기로 거론한 ‘발분’과 같이<sup>28)</sup>, 글을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든 ‘발분’ 때문이었다. 주승택은 강위의 『시경』에 대한 諫書論을 검토하고 시문학의 현실 비판적 기능을 중시 여긴 문학적 지향을 주목한 바 있다.<sup>29)</sup> 즉, 글쓰기 현장에서 경험한 ‘발분’은, 글의 실천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현실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글을 쓰지 않을 수 없도록 추동한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강위는 『자서』에서 민란이 일어났을 때 백성에게 위협을 당하여 잡안

28) 聞之二師, 曰, 詩三百篇, 皆賢聖發憤之所作, 史公此論, 自不可刊. 蓋非賢聖則不能作賢聖, 而不發憤則又不應作此聖師之刪而尊之以爲經者也. 『詩稿』 卷2, 『上黃孝侯侍郎鈔書』, 494a쪽.

29) 주승택, 앞의 논문, 192-197쪽.

에 화를 입어도 분노할 겨를이 없었고, 가족을 이끌며 사방으로 유리하면서도 한스러운 마음이 없었던 이유로, 民情을 근심했던 마음을 꺾었다. 이어 상경하던 길 위에서 초야에 대책을 묻는 행사가 거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북쪽으로 향하여 손을 모으고 매우 성대한 행사라며 기뻐했던 일을 추억하였다.<sup>30)</sup>

강위는 4년 만에 받아본 글을 읽고 다시 고쳐 正本을 얻고자 하였지만, 자신이 처한 현실의 상황적 제약 때문만이 아니라 ‘흥’이 없어졌으므로 글을 수정하지 않고 그냥 두었으며, 헤진 상자에 글을 남겨 놓은 이유는 당시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덤덤한 듯 서술하였다. 공공연한 발분[公然發憤]을 추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의책』의 작자로서 강위를 다시 소환하지 못했다.

### 3. 「의삼정구폐책」의 서술적 특징과 의미

#### 1) 구성 및 서술 양상

『의책』은 虛頭-中頭-逐條○說擧○軍政, 田政, 還政-破題-大抵-當今-主意-篇終으로 문집에 단락이 구분되어, 장편인 글의 구성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강위가 시에서 兵餉에 대해 지었다고 밝혔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軍政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며, 허두부터 편종까지 일관된 대주제가 관통한다.

현실 인식을 촉구하는 허두와 당시 이혁 논의의 쟁점이었던 經用的 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중두 이후, 삼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30) 余於是時, 爲民所刦而不敢從, 以至家破而不暇憤也. 奉老挈幼, 流離四方而無恨心焉. 如此者, 爲民情之可憫也. 故余時有詩曰: “衆怒不可解, 孤懷豈能伸, 作何大功德, 謝此千萬人.” 非敢爲矯情之言, 其實願如是也. 道路中, 聞有詢策艸野之舉, 北首攢手曰: “甚盛舉也.” 『文稿』卷4, 「擬三政擧弊策」, 「自序」, 520a-b쪽.



인 축조 단락에서는 군정, 전정, 환정의 순으로 글을 구성하였으며, 군정을 가장 많은 분량으로 서술하였다. 이는 삼정은 곧 군정 하나일 뿐이라는 글의 논지가 반영된 서술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수의 임술년 삼정책이 책제의 질문 순서대로 전정, 군정, 환정의 순으로 구성되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군정에 이어지는 전정 역시 병농일치의 합당함을 논하는 맥락에서 서술되는데, 정전제에 삼대의 養民의 뜻이 담겨있다는 시각을 바탕으로 군정과 관련된 전제 논의에 집중하였다.<sup>31)</sup>

당시 조두순이 지은 策題의 주요 내용은 전정의 양전, 군정의 사괄, 환정의 견탕 시 경용의 충당 방안 등이었다. 당시 제도개혁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제출되었지만,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는 가장 문제로 대두된 환정의 폐단을 수습하기 위하여 罷還歸結의 조치가 내려진 것 이외에는 대체로 기존 제도의 운영상의 폐단을 바로잡는 절목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강위가 주장하는 군정의 제도개혁론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았고, 『의책』의 논의도 책제의 범주와 차이점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강위는 軍丁을 정확히 파악하고 以田出兵의 취지를 살려 양병하여 군대를 실질적으로 정예화 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위해 귀천을 불문하고 군역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는 기존의 군제 운영상의 폐단을 바로잡는 방법론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제도 개혁론적 성격을 띤 주장이었기 때문에, 주장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구체적 실현 방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논지 전개에 핵심 관건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한 주장의 대전제이자 근거는 무엇보다 강위 자신이 목도한 현실을 핏진하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허두와 중두는 글의 전체적인 방향과 논조를 제시하고, 글의 주제를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강위는 허두에서 왕의 구연과 선정에 대한 비교적 짧은 칭양 이후 민심이 이반되어 민란이 발생한 현실에

31) 강위의 전정 서술에 대해서는 강혜중, 앞의 논문, 127-128쪽의 내용 참조.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강하게 촉구하고, 이를 위하여 민란의 현장과 백성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면서, 조정의 대응을 비판한다.

“臣愚死罪”라는 표현을 반복하면서 왕이 臯陶, 稷, 契의 말을 따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管仲, 吳起, 商鞅의 말도 쓰지 못한다고 하거나<sup>32)</sup> 왕 안석이 행한 ‘변법’이라는 말을 피하게 된 것은, 그의 전횡의 잘못 때문이지 변법 자체의 과오가 아니라고 하는 등<sup>33)</sup> 전복적이고 긴장되는 서술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다. 이는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한 논리적 전제를 개진한 것으로, 인정과 여론은 건문에 익숙하고 제도에 얽매어서, 병권 강화, 신상필벌과 부국강병을 주장한 관중, 오기, 상양의 견해를 왕이 따르고자 하여도 불가하다고 지적한다.<sup>34)</sup>

강위 삼정책의 특징은 민란의 현장을 매우 상세히 서술하면서, 직설적으로 守宰와 조정의 실정을 비판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하읍에서 상황을 목격하고, 백성들의 말을 들으며 살핀 사정을 펴진하게 묘사하고 백성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명분은, 왕이 민란의 실체와 원인을 통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① 어리석은 신이 죽음을 무릅쓰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조정의 위신이 세워지지 않으니, 은택이 다하고, 법의 기강은 크게 무너졌습니다. 하읍의 소민이 감히 “조정이 나에게 무슨 소용인가?”라고 말하며, 서슴없이 노기를 일으켜 이 변고를 행하였습니다. 그 사정을 조용히 살펴보면,

32) 臣愚死罪, 殿下非惟臯夔稷契之言, 不能從也, 卽管仲吳起商鞅之言, 不能用也. 臣愚死罪, 夫變周之制, 作內政而寓軍令, 管仲之言也, 捐不急之官, 以養戰士, 吳起之言也, 信賞必罰, 任怨而不撓, 以收富強之功, 商鞅之言也. 不審殿下能用此三子者之言, 否乎? 『文稿』卷4, 『擬三政掾弊策』, 525b쪽.

33) 宋仁宗, 聖帝也, 而蘇軾, 王安石輩, 輒陳奮發振刷之規, 皆以其時言也. 安石得志, 乃以紛更誤國, 而天下之士, 諱言變法, 豈盡然哉? 是乃安石執拗之過, 而非變法之過也. 위의 글, 525c쪽.

34) 강혜중은 해당 단락에서 언급되는 인물군과 변법을 거론하는 파격성은 여타의 임술년 삼정책과 차이를 보이는 대목으로 거론한 바 있다. 강혜중, 앞의 논문, 93-94쪽.

이는 그 연유가 두려워할만 합니다. 신이 수만의 무리를 보니, 갑자기 생겨난 것으로, 백건에 모난 몽둥이를 들고 두려운 모습인데, 순하기도 하고 거스르기도 하여 그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어루만지는 것과 죽이는 것, 몽둥이와 계책 중 무엇을 우선으로 하여 백성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서찰을 가지고 하소연하러 와서, 의관을 풀어헤치고는, 위협하지 않는 것은 어째서이겠습니까? 장병의 신하로 곧바로 출동하기를 준비하지 않고 스스로 곤욕을 받아 어찌할 수 없으니, 위로는 조정에 누가 되고 아래로는 軍機를 기만합니다. 백성이 이와 같음을 보고 창황하여 가련한 낮빛으로, 과연 조정이 나와 무슨 상관이나고 말하며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지르며 크게 분노를 분출하니, 여러 읍에서 더욱 본받아 다른 곳에서 같은 목소리를 높입니다.<sup>35)</sup>

② 백성의 말에 이르기를, “불법을 저지른 신하는 전과 같고, 가혹한 정치는 고쳐지지 않으며, 단지 백성을 죽이니, 배고파 죽고, 얼어 죽네. 지금의 형세는 칼을 빼들어도 죽고, 장래의 형세는 쇠몽치로 재물을 뜯겨 죽으니, 이미 죽게 되어 있네. 빨리 죽느니만 못하니, 차라리 접장과 함께 죽어 묻히는 게 낫겠네.”라고 합니다.<sup>36)</sup>

위의 두 예문은 백성이 관장과 이서, 저인, 호족 등에게 행한 폭력 행위를 상세히 묘사한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백성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며 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정을 납득시키는 한편 악화된 민심을 상세히 전달한다. ①에서는 백성이 조정에 대한 불신으로 민란을 일으킨 모습을, ②에서는 불법을 자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관료를 원망하

35) 臣愚死罪, 今朝廷之威信不立, 恩澤幾竭, 法網大壞. 下邑小民, 敢謂朝廷無如我何, 悍然起怒以爲此變也. 默察其情, 此其故可畏也. 臣見數萬之衆, 突如其來, 白巾楞棒, 景象危怖, 爲順爲逆, 其意莫測, 於撫於勦, 相籌何先, 以爲民耶? 抱牘來訴, 卸脫衣冠, 非刦而何? 奈何以將兵之臣, 無備輕出, 自取困辱, 上累朝廷, 下悞軍機, 百姓見其如此, 倉皇可憐之色, 果然朝廷無如我何, 殺人放火, 大泄其憤, 列邑効尤, 他路同聲. 위의 글 527d-528a쪽.

36) 百姓之言曰: “不法之臣, 晏然如故, 苛政不改, 但殺百姓, 餓則當死, 凍則當死, 到今之勢, 挺刃則死, 將來之勢, 槌剝則死, 旣其當死, 不如速死, 寧與接長, 同死一坑.” 위의 글 528b-c쪽.

고 백성 중에서도 학정으로 유리하며 의지할 곳 없는 窮民이, 결국 집장과 함께 亂民의 편에 서게 되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관료의 탐학이나 무능을 고발하고 백성의 사정을 전하는 것은 그저 위정자의 애민정신을 촉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民의 심경과 동향을 상세히 서술함으로써 대대적인 구폐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앞으로 더욱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궁극적으로 군정 정비와 병권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핵심 근거로 삼고자 한 것이다.

강위가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입장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기록은 문집을 편찬할 당시에는 누락되었지만 고환당의 손자인 姜範植이 전한<sup>37)</sup> 『代茂朱民人請掾近弊狀』<sup>38)</sup>을 통해 알 수 있다. 글의 제목 옆에 백성들의 요구에 응해서 쓴 대작으로 자신의 주견이 이와 같지 않다고 밝혔지만, 軍糴의 폐단은 곧 田民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 귀천에 따라 군역이 고르지 않은 문제점 등을 거론하는 부분은 『의책』의 내용과 동일하여, 강위의 주장이 일정부분 백성들의 생각과 공통된다고 볼 수 있다.

강위는 책제를 직접적으로 인용하지 않지만, 중두와 전정 단락에서 각각 “聖教”와 “聖諭”로 지칭하며 내용을 거론하는데, 중두에서는 책제의 주요 관심사인 취모보용의 문제, 경용 급대 방안을 구하는 입장에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낸다. 債還制를 모두 혁파하고 고제의 삼정인 戶口田을 고르게 해야 하므로, 이는 군현이 아니라 조정에 달려 있으며, 치란의 기회는 조정의 계획의 득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聖躬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현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조정, 나아가 왕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중두는 이처럼 삼정의 초기 제도가 지닌 취지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제

37) 주승택, 『姜瑋의 著述과 《古歡堂集》의 史料的 가치』, 『규장각』 14,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1, 113쪽.

38) 『古歡堂收草』 1冊, 규장각본(강범식 필사본 『고환당집』), 46a-49b.

도가 운영되기 때문에, 常法이 행해지지 않아 백성의 신뢰를 잃게 된 것을 무엇보다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세부 논의를 전개하는 축조는 군정, 전정, 환정에 대한 실패와 구폐를 각기 한 단락 안에 서술하였다. 군정에서는 먼저 백성의 수효와 빈부귀천 등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정사의 근간이고, 절제가 인주의 큰 권한이며, 군정은 절제의 소이행이라는 핵심 주장을 전제한다. 또한 군제의 초기에는 천하의 인구가 다 군역에 속하고, 천하의 호가 다 군용에 조력하여 귀천의 품이 다르지 않고 양역의 등급에 다름이 없었으나, 시대가 지나면서 취지를 잃고 역의 불균이 발생하여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어서 고려 태조부터 역대 군정의 득실을 논하면서 여러 폐단은 수령과 이서의 잘못을 별주는 것으로는 금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급히 팔정을 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고금을 헤아려 먼저 군정을 정하고, 귀천을 묻지 말고 군적에 모두 올리며, 인구의 증감을 규칙적으로 파악하고 隱漏자를 엄물로 다스리면 재부의 원천이 되는 백성을 안정시키고 관리할 수 있게 되므로, 국부가 더욱 넉넉해지므로 경용을 불급하는 근심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군정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서술된 전정은, 田民을 안정시키는 데에 힘을 쏟아야 하며, 속히 군제를 닦아 백성의 수를 안 다음 전정을 바르게 하는 것이 인심에 관계된다면서, 삼대를 참고하여 국초의 제도를 회복하여 군으로 제민하고, 전으로 제군하여, 출입을 서로 알면 백성이 흠어지는 걱정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호구의 부세를 균등히 하고 1/10세를 거두면, 세금이 무겁다는 원망이 있을지언정 籍式은 더욱 정밀하게 닦이고 경계가 바르게 된다고 하였다. 특히 양전의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담당할 인재를 얻지 못함을 우려하는 聖諭, 즉 책제의 시각을 반박하고, 이십년에 한번 양전을 시행하는 조종의 법이 백여 년 간 거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양전이 곧 재용을 마련하는 방법임을 강조하였다. 환정의 경우는 모두 蠲蕩하고, 臥還의 취모는

거론하지 않으며, 남은 곡식은 별도로 상평, 사창의 범규를 논의하여 경용을 충당하고, 戶口田을 恒賦로 삼아 삼대의 국초 제도를 만든 성대한 뜻을 틀로 삼은 후 백성에게 나오는 일정한 세금으로 필요한 데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과제 단락에서는 국가의 경용에 소모되는 환모의 수와 백성의 수 등을 헤아리고, 구체적인 수치를 따져 균등 징수로 재정을 마련하는 방법을 논하면서, 虛簿를 없애고 관리의 탐학으로 행해지는 逋欠에 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입기강을 강조한다. 追贓을 다스리는 법이 엄하지 않으면, 비록 倉制를 혁신 하더라도, 糶糴의 폐단을 해결할 수 없다고 하여 당시 쟁점이 되었던 환곡의 문제를 화두로 삼아 현안에 대한 논의를 펼친다. 대저 단락에서는 理財에 대하여 본말론적 시각에서 근본을 돌이키고, 대변통, 대경장, 대변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한다. 재물과 민심의 반비례적 관계를 필두로 德과 財를 본말의 관계로 설명하며, 조삼모사와 같은 부세 운영을 크게 바꾸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재부의 원천을 확보하여 백성의 마음을 혁신하면 경용을 근심하지 않고 민심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토지와 백성의 수를 파악하여 부세를 균등히 하고 요역을 공평히 해야 한다는 축조의 주장과 상통한다. 강위는 제도 정비를 바탕으로 수입을 따져 지출하는 것이 고금에 통하는 이재의 법이라고 하였다. 이어지는 당금에서는 仍舊論과 釐革論의 논의를 각각 검토하여 득실과 한계를 살폈다. 이혁론 역시 卹換귀결에 그치고, 삼정의 개혁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본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인구론보다 나올 것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논의들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자 고식지계라고 비판하였다.

이처럼 과제, 대저, 당금 단락은 책체 논의의 쟁점인 환정의 문제를 새롭게 환기하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지 않는 기존 논의의 부당성을 검토하여 자신의 핵심 주장을 뒷받침하도록 서술하였다. 이어지는 주의 단락은 상당한 분량으로 서술하였는데, 왕이 지닌 禁暴止亂의 권한과

역할을 전면적으로 내세워 논지를 고조시킨다. 삼정은 곧 군정 하나일 뿐이므로 국가가 兵政 하나만을 닦는다면 태평의 정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人主와 조정의 가장 큰 임무는 금포지란과 兵政의 확립이라고 역설한다. 이는 전술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직설적으로 서술한 것으로, 대사공, 대규제, 대방략, 대의론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주장을 전개한다.

먼저, 君道는 兵으로 확립되고 兵制는 백성의 무리로 만들어지므로, 백성들이 흩어지면 병법은 스스로 시행될 수 없고, 병제가 헤이해지면 군도는 독립할 수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형세라고 전제한 후, 금포지란의 권한을 높인 이후 억조의 명을 맡아 천하가 편안해 지도록 하는 것이 萬古의 聖人에 제일가는 대사공이라고 정의한다. 이 대사공은 정전제와 租庸調 제도의 취지를 살려, 강한 병력을 양성하는 대규제를 제대로 운영하고, 나아가 대방략을 실현시켜야 획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강위가 주장하는 대방략이란 巨姓大族과 豪民의 형세가 小民의 무리를 이기기에 부족하고, 소민은 窮民을 이기지 못하여, 民의 무리를 호거족이 대적할 수 없는 상황을 올라 탈만한 기회로 삼는 것이다. 이처럼 대규제와 대방략을 잘 살피 기강을 세우면 비로소 금포지란의 대사공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강위는 젊은 시절 관중과 상양의 논의를 평생 제일의 대의론이라고 여겼고, 아조의 세 가지 대의론을 세종시기의 공안 개정, 선조시기의 대동법 창시, 영조시기의 균역청 설치로 꼽으면서, 제도를 시행하는 기준을 理財에 두지 말고, 병정을 위주로 할 것을 강조하였다.

주의 단락 이후 마지막 편중 단락의 첫 문장에서 는 절제의 설로 글을 마치겠다고 밝히고, 인주에게 부여된 殺機의 정당성과 작동 원리를 서술한다.

인주는 살기의 소치를 발할 수 있습니다. 기리는 것은 인주의 마음임

니다. 살기라는 것은 인주의 노여움입니다. 인주가 한번 노기를 발하여 천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 천지가 번복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기가 심함입니다. 인주가 노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가 이와 같으므로, 법으로 제어하는 것으로 그 기가 지극한 바를 다하면 천하기 크게 복종합니다. 이는 이른바 절제입니다. 지금의 정법은 모두 폐단이 생겨 남북의 백성이 분수와 기강을 범하여 무리를 이루어 함부로 살인을 저지르기에 이르렀으니, 조정이 살인을 그치지 않음은 주군에 병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군에 병사가 없는 것은 국가의 절제를 잃었기 때문입니다.<sup>39)</sup>

위의 인용문은 편종의 서두로, 『陰符經』에 “하늘이 살기를 발하면 별자리가 뒤바뀌고, 땅이 살기를 발하면 용이나 뱀이 땅으로 기어 나오며, 사람이 살기를 발하면 하늘과 땅이 뒤집어진다.[天發殺機, 移星易宿, 地發殺機, 龍蛇起陸, 人發殺機, 天地反覆.]”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陰符經』은 도교의 경전으로 성립 시기나 저자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하지만, 역대로 많은 주석서가 편찬되었다. 그 중에서 당대의 인물인 李筌은 『陰符經』의 다른 주석서와는 달리 정치와 군사이론을 논하였는데, 군신의 관계를 천지에 비유하여, 천도에 부합하지 못하는 간신은 재앙과 사회 혼란을 발생시켜 천도를 거슬러 죽임을 당한다고 논한 바 있다.<sup>40)</sup> 즉, 강위는 천도에 부합한 왕의 절제 행사를 통해 조정의 권위를 세우고 민란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병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것이다.

「의책」의 후반부인 주의와 편종 단락은 전 분량이 군정 개혁과 병권

39) 人主能發殺機之所致也。機者, 人主之心也, 殺機者, 人主之怒也。人主能發一怒安天下之心, 則天地可以翻覆, 此其機也甚矣。人主之不可不怒也, 其機如此, 故制法以極其機之所至, 而天下大服, 是所謂人主之節制也。今政法俱弊, 南服之民, 干分犯紀, 至於合衆以擅殺人, 而朝廷無以止其殺者, 由州郡之無兵也。州郡之無兵者, 由國家節制之失也。『文稿』卷4, 『擬三政掾弊策』, 555a쪽.

40) 자세한 내용은, 강경구, 「『陰符經』의 道教思想에 관한 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2, 71-72쪽 참조.



강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할 수 있다. 대책의 편종이 군주성학론이나 용인론 등 도학적 경세론에 치우친 서술 경향성을 보이는 것과 달리, 『의책』의 편종은 주의 단락에서 전개된 금포지란의 심화된 논의에 더하여 군주의 병권 강화를 서술한다는 점에서 편종의 정형성을 벗어나고, 글의 전편을 일관된 주제로 전개하는 정합성을 보여 준다.

편종의 정형성 탈피는 다른 임술년 삼정책에서도 발견되는 특징이다. 『의책』의 “편종” 표기 옆에 “別陳己見”이라고 적혀 있듯이, 편종은 작자에 따라 책제의 질문에 대한 답변 이외의 의견을 개진하거나 추가되는 내용을 서술하는 단락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허전과 張心學의 삼정책의 경우 각각 책제의 논의를 벗어나 근본이 되는 경세론을 서술하거나, 통진 부사로서 재임하며 목도한 畝弊를 상술하였다.<sup>41)</sup> 즉, 강위의 편종 서술은 임술년 삼정책이 시무책으로서의 실천성을 지녔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한 사례로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의책』의 구성과 서술 양상을 개관해 보았다. 글 전체에 핵심 주제가 관통하며 반복되는 가운데 책제의 문제의식에서 벗어난 제도 개혁적 주장을 펼치기 위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었다. 허두와 중두에서는 명확한 현실 인식과 조정의 정책적 전환의 촉구하였고, 장편의 글에는 당위론적 서술보다는, 시무의 실제와 밀접한 내용을 구성하였다. 제도 개혁의 모델이 되는 고제의 취지와 현실 적용 방법론을 밝히고자 주력하였으며, 이를 위해 유형원, 정약용 등의 선행 논의, 주대의 제도 등 고제의 연혁과 득실, 역대 제도의 변천 과정을 자세히 검토하였다. 또한 군신의 문답이라는 殿策의 문체 양식을 따르면서도 직접적으로 왕의 실정을 비판하고 금포지란과 관련하여 왕권 행사의 방법론을 설파하는 등

41) 許傳, 『性齋集』 卷9, 『政揅策』, 한국문집총간 308; 張心學, 『江海集』 卷5, 『對策』, 국립중앙도서관본(한古朝46-가862). 임술년 삼정책의 편종에 대한 특징은, 강해중, 앞의 논문, 31쪽, 134쪽 등 참조.

출처관의 경계를 넘나드는 화법을 보이는 양상이 포착되었다.

다만 강위 자신이 언급한 것처럼, 이는 최초의 정본이 아니므로 강위가 불태우기 전의 글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다. 또한 강위 문집의 교수를 맡았던 이견창 등 문집 편찬과정에서의 영향 관계가 반영된 측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의책」에 『목민심서』의 내용이 일부 전사되었고, 수치상의 오류 등이 발견된다는 점도 지적된 바 있다.<sup>42)</sup> 관련한 내용이 추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진다면, 「의책」의 글쓰기와 텍스트로서의 성격을 보다 잘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집으로 전하는 강위의 「의책」은 내용과 화법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당대의 현실을 생생히 전달하고, 유의미한 정책적 진단과 개혁 방법론을 전개하는, 실용적이고 설득력 있는 시무책의 글쓰기 특징을 보여준다. 「의책」은 이와 같이 강위의 문장가로서의 면모를 잘 드러내는 작품으로 볼 수 있으며, 당대에도 높이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 2) 당대 비평과 의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의책」은 삼정구폐론을 제시하는 실용적인 텍스트로서, 경제 지식과 논리적 전개, 독자를 설복시키는 수사적 표현 등으로 이루어진 고도의 글쓰기라고 할 수 있다. 「의책」은 그 동안 목도해 온 사회적 모순이 민란이라는 대사건으로 표출된 글쓰기 현장에서, 강한 심정적 동기로 지어진 작품으로, 대책이라는 ‘글’의 완성도에 고심했던 강위의 문장가로서의 작자의식이 반영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책체의 논점에 충실히 답하면서도, 대책에 종종 보이는 과도한 칭양의 투식어구

42) 송찬섭은 균정 서술에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전사한 부분이 발견된다고 하면서, 이것이 『목민심서』가 당대 널리 유전되었던 이유라고 추측하며, 추후 해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임성수는 「의책」의 내용상 원장부의 수치 언급이 일정치 않거나, 잡다한 실수, 논리적 모순이 발견되는데, 초본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송찬섭, 앞의 논문, 12쪽 각주 11번; 임성수, 앞의 논문, 339쪽.

와 불필요한 당위론적 서술을 지양하며, 민란의 현장을 상세히 묘사하고, 역설과 전도의 수사법으로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서술적 특징을 보여준다. 이는 기존에 지적되었던 대책의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된 면모라고 할 수 있다. 정조는 대책에서 보이는 무용한 형식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董仲舒의 「天人策」을 모범작으로 거론하며, 실제의 체득에 바탕을 두어 사업에 실시할 수 있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尹愔는 대책에 일관되고 치밀하지 못하게 구폐론이 전개되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sup>43)</sup>

한편, 최한기는 「策問變通」에서 시무책은 治民에 취할만한 적지 않았지만, 세속의 변천으로 불만한 것이 없게 되었다면서, 策問에 당시의 급무와 事宜에 절실한 것만을 묻고, 널리 繁蕪하거나 묵은 것은 끌어낼 필요가 없으며, 참되고 절실하게 대책을 진언할 수 있는 문로를 열어 비록 말이 과격하더라도 죄를 묻지 않아야 직언의 풍조를 확립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문장만 화려할 뿐 조금도 실속이 없는 자는 일체 채용하지 말아서 浮華한 습속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44)</sup> 이러한 맥락에서 조두순이 대제한 임술년 삼정책의 책제 역시 시무책의 내실을 기하는 책제의 방향성을 제시한 측면이 있었다. 삼대의 고제와 중국의 역대 전고를 멀리서 끌어오지 말고 아조의 제도의 득실을 논하도록 요구하였고, 문사의 기예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명시하여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혔다.<sup>45)</sup> 「의책」의 서술적 특징은, 이와 같은 책제의 방향성과 초야의 유생에 이르기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試策의 취지와 일정 정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3) 正祖, 『弘齋全書』卷49, 「策問」二, <策規>, 한국고전종합DB; 尹愔, 『無名子集』文稿 冊十一, 「科說」十二, 한국문집총간 256.

44) 苟使規整策問法式, 問之以當時急務, 切實事宜, 不必廣引繁蕪陳蹟, 要開所答真切門路, 語雖激節, 勿致罪責, 以樹直言之風. 文侈章彩, 小無實用, 以抑浮華之靡. 崔漢綺, 『人政』卷16, 選人門三, 「策問變通」, 한국고전종합DB.

45) 보다 자세한 논의는 강혜중, 앞의 논문, 82-87쪽 참조.

한편, 강위는 시책에 응하지 않고 글을 불태워버렸지만, 『의책』은 최소한 주위의 독자들을 상정한 글쓰기였다고 볼 수 있다. 『의책』의 작성 과정에서 정건조가 강위의 글을 읽고 의견을 제시하였듯이, 임술년의 삼정책은 완성되기까지 주위의 독해를 거치며 비평적 의견이 반영되거나, 이후 유전되면서 문집의 서발문이나 인물의 행적을 기리는 작품 등을 통해 경세가로서의 면모를 증명하는 글쓰기로 기려지기도 하였다. 『의책』 역시 시무에 깊은 관심과 통찰을 지녔던 강위의 인물됨을 드러내는 글쓰기로 평가가 되었다.

황현은 강위가 좋아자 곡하며 지은 시에, “근궁한 시름에 권형책을 지었네[窮愁下筆權衡策]”, “경제제민 뜻과 어긋나니 만년엔 시에 의탁했네[經濟違心晚托詩]”<sup>46)</sup>라 하였고, 이견창은 도를 논하고 정사를 논하고 천하의 정세를 논하는 것이 모두 선생보다 뛰어난 자가 없다고 하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책자서』를 강위의 뜻을 잘 드러내는 글이라고 꼽았다.<sup>47)</sup>

강위는 한미한 무반 가문의 출신으로, 평생 자신의 경제론을 펼칠만한 관직을 얻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김윤식은 강위가 외롭고 빈한한 처지에서 떨치고 일어나 힘써 배우고 스스로를 반듯하게 세웠으며, 다섯 수레가 넘는 정도의 책을 읽고, 시무에 뜻을 두어 학문을 이루었으나, 쓰일 길이 없어, 문밖을 나서도 외롭고 쓸쓸할 뿐이었다고 하였다.<sup>48)</sup> 이처럼 『의책』은 불우한 경세가로서의 강위의 능력과 처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작품으로 인식되었다.

46) 黃玆, 『梅泉集』 卷1, 『哭秋琴先生 四首』.

47) 尤攄心當世事, 高可以爲河汾太平之書, 卑之猶眉山權衡策, 此先生志也. (중략) 道論政及論天下形勢, 皆所謂無能有發者 (중략) 至其文如詩稿, 擬策自序上黃孝侯書諸作, 可以見先生之志. 『文稿』 卷4, 李建昌, 『序』, 374a-c쪽.

48) 古歡先生奮拔孤寒, 力學自樹, 所讀之書, 殆過五車, 而有志於當世之務, 學成而無所售, 出門落落. 金允植, 『雲養集』 卷9, 『姜古歡瑋遺集序』 甲申八月, 한국문집총간 328, 390d쪽.

일찍이 의책을 지었는데, 대개 이만 구천여 언이었으니, 옛것을 끌어와 현재를 고증하고 삼정의 득실을 남김없이 논하여 그 재주나 포부를 알 만하였으나, 세상은 단지 그를 시인이라 칭하였다. 애석하다. 장작 소감에 한번 명을 받았으나,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끝내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sup>49)</sup>

위의 글을 지은 허전은 당시 장편의 삼정책을 작성하고 제출하여 300여 편의 성적으로 100인에 선발되었으며, 앞서 언급한대로 책제의 논의보다 확대된 본말론적 경제론을 편중에 서술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폐론을 피력한 인물이다. 허전은 강위의 『의책』이 옛 제도와 당대의 제도를 아울러 검토하며 득실을 밝힌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강위의 경제가로서의 능력과 인물됨을 기렸다. “옛것을 끌어와 현재를 고증하고 삼정의 득실을 남김없이 논하였다”는 점을 거론한 것은, 삼정 중 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제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핵심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주대로부터 역대 제도의 득실을 치밀하게 검토하였던 서술적 특징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책제에서 이러한 고증을 지양하도록 한 것은 당대의 시무에 집중할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논의의 범주를 삼정 운영론으로 한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제도 개혁적 주장에 방점을 둔 논자들은 중국의 고제로부터의 역대 제도의 득실을 따지는 논의에 집중하기도 하였다. 강위도 역시 병농일치의 정전제의 취지를 살리고 호구전의 常法을 확립하여 군제를 개혁하고 삼대의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 위하여, 다양한 역사적 전고를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견장은 강위가 가족과 영호남에 머무를 때, 姜文章으로 불릴 정도로 명망이 있었다고 하면서, 강위가 옛 전적을 다

49) 瑋又嘗作擬策一道凡二萬九千餘言。引古證今，論三政得失甚悉，其所蘊抱可知，而世但以詩人稱之。惜乎，匠作少監一命，亦不屑就焉。許傳，『性齋集』 권30, 『姜瑋傳』, 한국문집총간 308, 605a-b쪽.

깨끗고 있으며, 나라 안의 지형과 군현의 利病, 여항의 풍속과 民情에 대하여 궁구하지 않은 바가 없다고 하였다.<sup>50)</sup> 허전은 이렇듯 박학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혁적 논의를 전개한 『의책』의 면모와 강위의 경세가로서의 자질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강위에게 시를 배웠다고 알려진 草<sup>51)</sup>이 작성한 『古歡居士擬策跋』에는 짧게나마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문학적 비평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술한 『의책』을 얻어 한 번 훑어보고 깊이 궁구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였는데, 사리가 막힘이 없고, 문사가 찬연하며, 또한 世法이 웅대한 논의에 들어맞았다. 나는 또한 웃으며 말하기를, “두타가 끝내 이것을 지은 것이 누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라고 하자, 그가 크게 한숨 쉬며,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이미 오래전에 거절하여 돌려보낸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나는 전일의 만남에서 말이 없음을 기이하게 여겼는데, 오늘날의 만남에서 또 말로써 기이하게 여기게 됨을 기뻐하였다. 침묵은 천둥과 같고, 말은 담벽과 같으니, 어찌 두 가지 법인가. 세상에 나가 세상을 경영하는 것 또한 오히려 이와 같을 뿐이다. 또한 그 군제를 바꾸고, 호부를 균평하게 하는 논의는, 시무에 절실히 들어맞을 뿐만 아니라 기를 운용함이 변화의 이치에 통달하니, 도를 깨닫지 않으면 말할 수 없으리라. 기이하도다, 두타는 진정 도를 깨우친 사람인가. 비록 그렇더라도, 예전에 유마거사<sup>52)</sup>가 세상을 위하여 병이 걸렸다고

50) 爲詩及他文章, 挈家寓湖嶺間, 湖嶺人至今稱君爲姜文章云. 君於古典籍, 無所不貫, 於國中大山巨水關塹城堡形勝, 郡縣利病, 閭里風俗情偽, 無所不究, 斂精研思, 窮微極博. 李建昌, 『明美堂集』 卷19, 『姜古權墓誌銘』, 349, 279a쪽.

51) 하강진은 『의책』의 발문이 초엄선사의 『草<sup>51)</sup>遺稿』에 수록된 것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두 사람이 만난 시기를 추론하며 발문이 1862년경 작성된 것으로 보았다. 발문에는 “沸星出日”에 지었다고만 적혀있어서 정확한 작성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우선 정건조가 보관해두었던 『의책』을 받아본 1866년 이후로 상정하고 추후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파악하기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하강진, 『초엄선사 『三花傳』의 작중인물과 공간의 실체』, 『한국문학논총』 50, 한국문화회, 2011 참조.

52) 유마거사는 석가의 교화를 도운 毘耶離城의 長者인데, 중생이 병들었으므로 자

하였는데, 두타가 이를 행하니 두타는 과연 병이 들었도다.<sup>53)</sup>

초엄은 백두산과 금강산에서 강위를 만난 이후 우연히 다시 강위를 만나 「의책」을 읽고 발문을 짓게 된 경위를 밝히며, 글의 말미에 위와 같은 비평을 남겼다.<sup>54)</sup> 초엄이 언제 강위의 글을 읽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강위가 임술년에 글을 짓고 불태웠다가 정건조가 수습한 글을 4년 만에 받아보고 서문을 붙였으니, 초엄에게 보인 「의책」은 정건조가 수습한 글을 1866년에 받아본 뒤 한 분을 따로 베껴 소장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초엄이 匡廬를 지나는 길에 강위를 만났다고 하였으니 임술년 이후 강위가 덕유산 근방에 머무르고 있을 때이고, 발문의 내용을 보면 글을 작성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이후로 판단된다.<sup>55)</sup>

초엄은 「의책」의 뛰어난 논리와 유려한 문사, 글의 내용 모두를 높이 평가하였다. 군제를 바꾸고, 호부를 균평하게 하는 논의는, 시무에 절실히 들어맞을 뿐만 아니라 기를 운용함이 변화의 이치에 통달[運機通變]하여, 득도한 이가 지은 경지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이 평어는 이견창이 주의 단락에 붙인 비평과 같다. “運機通變”이라는 평어는 초엄과 이견창 모두 공감한 것으로, 「의책」을 명문으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견창은 “대사공, 대규제, 대방략으로써 본이 되는 바를 논설하

---

신도 병이 들었다고 하며, 병문안을 온 여러 보살들에게 不二法門의 『維摩經』을 설했다고 한다.

53) 因得所著擬策, 驟閱一過, 未及深究, 然事理暢然, 詞采曄然, 盖又世法中宏論也. 余又晒曰: “頭陀竟爲此念所累也.” 太息曰: “有是哉. 然久已謝遣之矣.” 於是, 余喜前日之遇, 以無言爲奇矣, 而今日之遇, 又以言爲奇, 默如雷霆, 言如墻壁, 豈二法乎? 出世經世, 亦猶是耳. 且其變軍制均戶賦之論, 非但切中時務也, 運機通變, 非聞道者, 則不能道矣. 奇哉, 陋其眞聞道者歟. 雖然, 昔者維摩居士, 爲世示疾, 陋而爲此乎, 則頭陀果病矣. 『文稿』卷4, 『古歡居士擬策跋』, 558c쪽.

54) 石顛鼎鎬(1870-1948)가 1925년에 지은 『草廣遺稿叙』에 따르면 草廣復初는 현종·철종 시기에 활동했고, 晩醒 朴致馥에게 經史를 배우고, 강위에게 시를 배웠다고 전한다.

55) 是秋余有黃梅之行, 路經匡廬, 忽又遇於三瀑之傍. 『文稿』卷4, 『古歡居士擬策跋』, 558b쪽.

였고, 대의론은 폭력을 금하고 난을 그치게 하는 것을 기점으로 삼고 운기통변을 신취로 삼아 장법을 이루었다.[論說所本, 以大事功大規制大方畧, 大議論作章法, 以禁暴止亂爲炤應, 以運機通變爲神趣]”고 하여 주의 단락의 내용과 문장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대사공은 군주가 금포지란을 행하는 절제, 대규모는 고제의 취지를 살린 제도, 대방략은 올라 탈만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력을 얻어 개혁을 이루는 것, 즉 다수의 민심을 개혁의 편으로 이끌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거성호족과 호민들의 반대를 물리칠 기회를 잡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의 단락의 “운기통변”이란 강위의 주장대로 대규모와 대방략을 성공시켜 제일의 성취인 대사공을 이루는 방법론의 전개 방식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강위가 천하의 도라는 것은 하나이지만 양단을 지녔으며, 성인은 이 하나의 도가 지닌 양단의 속성을 운용하였다는 변통의 방법론을 설파한 것 같이, 위정에 있어 변통의 방법론을 제고하도록 서술한 주의 단락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56)</sup>

이덕무는 兵이란 부득이한 것이지만, 聖人이 금포지란의 뜻으로 사용하였으니, 처음부터 이용후생과 관련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한 바 있다.<sup>57)</sup> 이렇듯 兵은 인정과 덕치를 행하는 군주가 지녀야 하는 好生之德과 함께, 양단이 되는 금포지란의 절제를 행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강위는 이러한 제왕학의 양단을 현실에서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의책」을 통해 논하고 있다.

56) 臣愚死罪, 聞天下之道一而已。故孔子曰, 吾道一以貫之。於是, 天下之士, 求其一而未得也。臣以爲天下之道, 莫不是二, 晝夜寒暑, 強柔虛實, 是也。是所謂兩端也。執兩端而通于一, 是之謂一貫也。晝夜寒暑強柔虛實, 特特相對, 各致其德曰兩, 晝變爲夜, 寒變爲暑, 強者化柔, 虛者化實, 倏忽相易, 莫察其形曰一, 聖人操其一, 而運其兩, 命之曰道。『文稿』卷4, 550a쪽.

57) 李夫兵, 不得已也。狀聖人用之, 以禁暴止亂之義, 則未始不與利用厚生。李德懋, 靑莊館全書, 卷24, 編書雜稿四, 武藝圖譜通志附進說, 李德懋, 『靑莊館全書』卷24, 「武藝圖譜通志附進說」, 한국문집총간 257, 306d쪽.



## 4. 맺음말

본고는 『의책』에 나타난 강위의 작자인식을 살펴보고, 서술적 특징과 의미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당대의 문장가로 높이 평가받았던 강위의 헌문산문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19세기 시무책의 지형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의책』의 저술 경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다. 『의책』은 강위의 친우 정건조의 강권에 의하여 지은 것이지만, ‘발분’이 글을 짓게 된 강한 심정적 동기가 되었음을 살펴보았다. 이는 민란으로 표출된 사회적 모순을 타파하지 못하는 당대의 부조리한 정치적 상황에 기인한 것이었다. 임술년의 구언의 취지에 적극 공감했던 강위의 『의책』은 자신의 현실 경험과 경세론을 적극적으로 엮어낸 작품이었다. 외부적 계기로 지어진 형식적인 글이 아닌, 대책이라는 ‘글’의 완성도에 고심했던 강위의 문장가로서의 작자의식이 반영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위는 특히 軍丁을 정확히 파악하고, 以田出兵의 취지를 살려 양병을 통한 군의 정예화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귀천을 불문하고 군역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기존의 군제 운영상의 폐단을 바로잡는 방법론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제도 개혁론적 주장이므로, 주장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구체적 실현 방안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논지 전개 핵심 관건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한 대전제이자 근거는 무엇보다 강위 자신이 목도한 현실을 꿰뚫히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허두에서는 왕의 구언과 선정에 대한 비교적 짧은 칭양 이후 민심이 이반된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강하게 촉구하고 대변통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민란의 현장을 상세히 묘사하였으며, 백성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전달하였다. 아울러 제도 개혁의 모델이 되는 고제의 취지와 현실 적용 방법론을 밝히고자 주력하였으며, 이를 위해 유형원, 정약용 등의 선행 논의, 주대의 제도 등 고제의 연혁과 득실, 역대 제도의

변천 과정을 자세히 검토하였다.

『의책』의 후반부인 주의와 편중 단락은 전 분량이 군정 개혁과 병권 강화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볼 수 있었으며, 이는 강위 삼정책의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기존의 과문으로 이루어진 대책의 편중이 군주성학론이나 용인론 등 도학적 경제론에 치우친 서술 경향성을 보이는 것과 달리, 『의책』의 편중은 주의 단락에서 전개된 금포지란의 심화된 논의에 더하여 군주의 병권 강화를 서술한다는 점에서 편중의 정형성을 벗어나, 글의 전편을 일관된 주제로 전개하는 정합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의책』은 군신의 문답이라는 殿策의 문체 양식을 따르면서도 직접적으로 왕의 실정을 비판하고 금포지란과 관련하여 왕권 행사의 방법론을 설파하는 등 출처관의 경계를 넘나드는 화법을 보이는 양상이 포착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의책』에 대하여 초엄과 이견창은 “운기통변”이라는 공통된 평어를 취하였다. 이는 고제의 취지를 살린 제도인 대규제, 다수의 민심을 개혁의 편으로 이끌어 거성호족과 호민들의 반대를 물리칠 기회를 잡는 대방략을 성공시켜, 제일의 성취인 대사공, 즉 금포지란을 행사는 군주의 절제권을 확립하는 방법론의 전개 방식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는 청자인 왕의 권한을 강화하는 논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강위가 주장하는 군정 개혁의 당위성을 아울러 뒷받침 하는 것이었다. 『의책』은 이처럼 군주가 위정을 행하는 도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고, 인정과 덕치의 양단이 되는 금포지란의 절제를 행하기 위한 병권의 강화와 군정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있었다.

이러한 서술적 특징과 파격성을 지닌 『의책』은 강위의 정론산문의 일단을 보여줌과 동시에, 임술년 삼정책의 실천성과 특수성을 잘 드러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추후 강위의 문학세계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고찰 및 다양한 시무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의책』의 새로운 면모와 성격이 더욱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자료

- 姜瑋, 『古歡堂收艸』, 한국문집총간 318.  
姜瑋, 『古歡堂收草』, 서울대 규장각본(奎3428-340).  
姜瑋, 『古歡堂收草』, 서울대 중앙도서관본(古3428-21).  
金澤榮, 『韶濩堂集』, 한국문집총간 347.  
朴珪壽, 『礪齋集』, 한국문집총간 312.  
李德懋, 『靑莊館全書』, 한국문집총간 257.  
鄭健朝, 『蓉山私藁』, 서울대 규장각본(奎1650-v.1-2).  
黃玟, 『梅泉集』, 한국문집총간 348.  
許傳, 『性齋集』, 한국문집총간 308.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동국대학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http://kabc.dongguk.edu>).

### 연구논저

- 강경구, 『『陰符經』의 道教思想에 관한 研究』, 원광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2.  
강혜중, 『壬戌(1862)년 三政救弊論의 형성 양상과 성격 고찰』,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김용섭, 『韓國近代農業史研究 3: 轉換期の 農民運動(Ⅱ)』, 서울: 지식산업사, 2001.  
김용섭, 『韓國近代農業史研究 1: 農業改革論 農業政策(Ⅰ)』, 서울: 지식산업사, 2004(新訂 增補版).  
박재경, 『조선시대 策文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

위논문, 2014.

송양섭, 「임술민란기 부세문제 인식과 三政改革의 방향」, 『한국사학보』 49, 고려사학회, 2012, 7-53쪽.

송찬섭, 「1862년 농민항쟁과 소통의 정책」, 『한국사연구』 161, 한국사연구회, 2013, 283-312쪽.

이광린, 「姜瑋의 인물과 사상- 實學에서 開化思想으로의 轉換의 一斷面-」, 『동방학지』 1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76, 1-45쪽.

이헌주, 「개항 직전 姜瑋의 현실 인식」, 『한국사상사학』 35, 한국사상사학회, 2010, 31-63쪽.

이헌주, 『姜瑋의 개화사상 연구』, 서울: 도서출판 선인, 2018.

임성수, 「임술민란기 秋琴 姜瑋의 현실인식과 三政改革論」, 『조선시대사학보』 79, 조선시대사학회, 2016, 291-343쪽.

주승택, 「姜瑋의 思想과 文學觀에 對한 考察」,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주승택, 「姜瑋의 著述과 《古歡堂集》의 史料的 가치」, 『규장각』 14,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1, 93-120쪽.

하강진, 「초엄선사 「三花傳」의 작중인물과 공간의 실체」, 『한국문학논총』 59, 한국문학회, 2011, 5-41쪽.

<Abstract>

##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and Writer's Consciousness Found in Kohwandang Kang Wi's "Uisamjeonggupyechaek"

Kang, Hye-Jong\*

This paper explores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and the writer's consciousness found in the "Uisamjeonggupyechaek" which Kang Wi composed in Cheoljong's effort to seek advice from his vassals about how to handle the 1862 Imsul-Year People's Revolt. This specificity as an taechaek, an answer to King's question, which was an unsubmitted document, knowledgeable authentic precedent, elaborate logic and elegant writing style makes it appropriate to use to closely investigate the literary history of the Joseon Dynasty's policies regarding important affairs.

Kang Wi highly regarded Cheoljong's advice-seeking efforts in the Imsul-Year. He wrote the "Uisamjeonggupyechaek" as a manuscript devoted to his personal experiences and theory of governance. On the surface, Kang Wi's motivation for composing this text was due to the strong recommendation of his close ally, Jeong Keon-Jo. However, in reality, it was a strong sentiment that drove Kang Wi, who could not achieve what he had desired in such adverse circumstances, despite his prominent knowledge and great reputation, to express his anger and frustration at the contradictions and irrational political atmosphere of his time.

---

\* Yonsei University.

The “Uisamjeonggupyechaek”, which contains approximately 30,000 characters, consistently asserts that large-scale reforms needed to be made with a focus on Military Policy, thus upholding the original intentions of the old statutes that served as the root of the Three Policies, which are related to land, military and relief work. In this manuscript, Kang Wi uses the reality he had witnessed as strong points to drive his narrative, describing events exactly as they had unfolded.

It is a formal and practical text that proposes measures to rectify harmful situations supported by administrative knowledge and logic with rhetorical devices to persuade its reader, the king. Even when faithfully answering chaekje, the King’s questions, Kang Wi did not focus on using typical formal language with its excessive praise or justifications that would often be seen in taechaek written as an exam’s model answer. Rather, he showed a narrative style that evokes empathy by describing the circumstances of the people’s revolt in great detail, using rhetorical devices, such as paradoxes and irony, to appeal to his audience.

Key Words : Kohwandang Kang Wi, Uisamjeonggupyechaek,  
Samjeongchaek, Imsul Millan, Simuchaek

■ 논문접수 : 2020년 7월 31일

■ 심사완료 : 2020년 8월 17일

■ 게재확정 : 2020년 8월 24일